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E, C-P2E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7월 24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E : BU026 종류 C-P2E : BU027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9.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9. 종류 C-PE 수익증권 10. 종류 C-P2E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A-E, C-E, C-F, W, C-P, 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A-E, C-E, C-F, W, C-P, C-P2, C-PE, C-P2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 수익증권 가입자 (2)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C-P2 수익증권 가입자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 종류C-PE 수익증권 가입자 (2)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C-P2, 종류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
<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
<tr><td>C-PE</td><td>BU026</td></tr>
<tr><td>C-P2E</td><td>BU027</td></tr>
</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
<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
<tr><td>C-PE</td><td>BU026</td></tr>
<tr><td>C-P2E</td><td>BU027</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4일
- 종류형 C-PE, C-P2E 수익증권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E, C-P2E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E, C-P2E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able><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E, C-P2E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E, C-P2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tr><th>종류 C-PE</th><th>종류 C-P2E</th></tr><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30%</td><td>0.30%</td></tr><tr><td>판매회사보수</td><td>0.25%</td><td>0.15%</td></tr><tr><td>신탁업자보수</td><td>0.05%</td><td>0.05%</td></tr><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td><td>0.02%</td></tr><tr><td>보수합계</td><td>0.62%</td><td>0.52%</td></tr><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r><td>총보수및비용</td><td>0.62%</td><td>0.52%</td></tr><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0.97%</td><td>0.87%</td></tr><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C-PE</td><td>99</td><td>313</td><td>549</td><td>1,250</td></tr><tr><td>C-P2E</td><td>89</td><td>281</td><td>493</td><td>1,121</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td></tr>
</table>

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나. 과세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종류형 C-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7월 24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E : BU033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0.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0. 종류 C-PE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5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생략)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종류C-F, W, S, I, C-P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종류C-F, W, S, I, C-P, C-P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공모주 등)에 30%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3.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1.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table>
<tr><td></td><td></td><td><table><tr><td>C-PE</td><td>BU033</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E</td><td>BU033</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4일
- 종류형 C-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E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공모주 등)에 30%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3.7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r>
</table>

<table>
<tr><td></td><td>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별첨 참조></td><td>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별첨 참조></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E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종류 C-P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table><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th></tr><tr><th>종류 C-PE</th></tr><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300%</td></tr><tr><td>판매회사보수</td><td>0.40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E 신설></td><td><table><tr><td>신탁업자보수</td><td>0.030%</td></tr><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15%</td></tr><tr><td>보수합계</td><td>0.745%</td></tr><tr><td>기타비용</td><td>실비</td></tr><tr><td>총보수 및 비용</td><td>0.745%</td></tr><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r></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PE</td><td>76</td><td>241</td><td>422</td><td>960</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td></tr>
<tr><td>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td><td>(생략)</td><td>(업데이트)</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r><td>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td></tr>
</table>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별첨>

[변경 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

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 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2E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7월 24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2E : BU034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6.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6. 종류 C-P2E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 C3, C4, C5, C-E, C-F, I, W, S, C-P, C-P2, C-P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C2, C3, C4, C5, C-E, C-F, I, W, S, C-P, C-P2, C-PE, C-P2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2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C-P2E / 펀드코드: BU03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2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C-P2E / 펀드코드: BU03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4일 - 종류형 C-P2E 수익증권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2E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별: 종류 C-P2E /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table>
<tr>
<td>사항</td>
<td>(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E 신설></td>
<td>(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able></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2E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2E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E, C-P2E 신설></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2E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C-P2E</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9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27%</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5%</td></tr>
<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td></tr>
<tr><td>보수합계</td><td>1.24%</td></tr>
<tr><td>기타비용</td><td>-</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1.24%</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td></tr>
</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
<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C-P2E</td><td>127</td><td>401</td><td>702</td><td>1,598</td></tr>
</table></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r>
<td>제5부 기타 투</td>
<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td>
<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td>
</tr>
</table>

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미국토탈일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E, C-P2E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7월 24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E : BU036 종류 C-P2E : BU035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3.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4.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3. 종류 C-PE 수익증권 14. 종류 C-P2E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W, S, C-P, C-P2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W, S, C-P, C-P2, C-PE, C-P2E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 수익증권 가입자 (2)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C-P2 수익증권 가입자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 종류C-PE 수익증권 가입자 (2)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C-P2, 종류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E</td><td>BU036</td></tr><tr><td>C-P2E</td><td>BU035</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E</td><td>BU036</td></tr><tr><td>C-P2E</td><td>BU035</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4일
- 종류형 C-PE, C-P2E 수익증권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E, C-P2E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E, C-P2E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able><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E, C-P2E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E, C-P2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tr><th>종류 C-PE</th><th>종류 C-P2E</th></tr><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20%</td><td>0.20%</td></tr><tr><td>판매회사보수</td><td>0.36%</td><td>0.30%</td></tr><tr><td>신탁업자보수</td><td>0.03%</td><td>0.03%</td></tr><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td><td>0.02%</td></tr><tr><td>보수합계</td><td>0.61%</td><td>0.55%</td></tr><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r><td>총보수및비용</td><td>0.61%</td><td>0.55%</td></tr><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25%</td><td>1.19%</td></tr><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able>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C-PE</td><td>128</td><td>404</td><td>708</td><td>1,611</td></tr><tr><td>C-P2E</td><td>122</td><td>384</td><td>674</td><td>1,534</td></tr></table></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td></tr>
</table>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